

전주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1136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[별지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. 4. 2. 접수 제16032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[청구원인]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권태관

별지